

1. 개정 이유

「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을 위해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중레저활동구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구명조끼를 대체하여 잠수복을 안전장비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,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제2항의 위임된 규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보험 계약이나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,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시험의 접수·변경을 시험 당일까지 할 수 있게 하여 시험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안전장비에 잠수복 추가(안 제23조제4항 신설)

수중레저활동자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중레저활동구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잠수복을 안전장비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함.

나. 보험등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신설(안 제39조의2 신설, 별표 10의2 신설)

보험회사나 공제사업자가 수상레저 보험 등 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는 시기, 방법과 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

다. 보험 및 공제 가입 여부의 확인(안 제39조의3 신설)

해양경찰청장 등이 수상레저 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

라. 조종 면허시험 응시표 서식 개정(안 별지 제4호서식)

면허시험 접수 또는 면허시험 응시일자의 변경은 면허시험이 시작되기
30분 전까지 시험장 방문 또는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(boat.kcg.go.kr)
홈페이지를 할 수 있도록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구명조끼[영 제2조제2항제8호 및 제16호에 따른 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사용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보드 리쉬(board leash: 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와 발목을 연결하여 주는 장비)를 말한다]”를 “구명조끼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구명조끼를 대체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장비를 착용할 수 있다.

1. 영 제2조제2항제8호 및 제16호에 따른 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사용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: 보드 리쉬(board leash: 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와 발목을 연결하여 주는 장비)
2. 「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수중레저활동을 위해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수중레저활동구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: 잠수복

제6장의 제목 “보칙”을 “보험”으로 한다.

제6장에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9조의2(보험등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)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

라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(이하 “보험회사등”이라 한다)가 보험이나 공제(이하 “보험등”이라 한다)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려야 하는 시기는 별표 10의2와 같다.

② 보험회사등이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보험등의 계약 체결 사실을 알릴 때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(이하 “가입관리전산망”이라 한다)을 이용하되, 가입관리전산망이 작동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.

③ 보험회사등이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

1.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(신규 등록기구의 경우 안전검사 번호를 말한다)
2. 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(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칭,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를 말한다)
3. 보험등 계약기간
4.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, 지방해양경찰청장,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의무자에게 보험등 가입을 명하는데 필요한 항목

제39조의3(보험등 가입여부의 확인) 해양경찰청장, 지방해양경찰청장,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의무자가 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할 때에는 가입관리

전산망을 이용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시하는 보험등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보험등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.

1. 해당 계약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파일이 생성되지 아니한 경우
2. 가입관리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

제4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장 보칙

별표 10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제8호 중 “필기시험의 경우 그 필기시험일 1일 전까지, 실기시험의 경우 그 실기시험일 2일 전까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(boat.kcg.go.kr) 또는 시험장 방문을”을 “시험이 시작되기 30분 전까지 시험장 방문 또는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(boat.kcg.go.kr) 홈페이지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9조의2, 제39조의3은 2025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0의2]

보험등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시기(제39조의2제1항 관련)

구 분	통지 시기
1.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등 계약의 체결 사실	계약 체결 사실을 보험회사등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2일 이내. 다만,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2.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등 계약의 해지 사실	계약 해지 사실을 보험회사등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2일 이내. 다만, 보험계약의 효력소멸일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3.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	
가.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보험등 계약이 끝난 경우	같은 달 20일까지
나.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보험등 계약이 끝난 경우	같은 달 말일까지
다.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보험등 계약이 끝난 경우	다음 달 10일까지

응 시 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제	호	접수일자	
응시자	성명		생년월일(외국인등록번호)	
	주소		사진 (3.5cm × 4.5cm) (압인)	
	연락처	전화번호(자택)		
		휴대전화번호		
		전자우편		
응시 면허의 종류	면허			

응시 횟수	필기시험			실기시험		
	시험 일시	응시번호	결과	시험 일시	응시번호	결과
1						
2						
3						
4						
5						

유의사항

-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이 시작되기 30분 전에 입실을 마쳐야 합니다.
- 시험장에서는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 국가가 발행한 신분증명서(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포함하며, 사진이 부착된 것을 말합니다) 및 컴퓨터용 사인펜을 지참해야 합니다.
-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그 불합격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-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그 불합격한 날의 다음다음 날부터 다시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표의 유효기간은 응시원서의 접수일부터 1년까지이며, 면허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필기시험 합격일부터 1년까지입니다.
- 불합격한 사람이 다시 시험에 응시하려면 위 응시표에 접수인을 받고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.
- 면허시험에 합격했다라도 조종면허증을 받기 전에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면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25조 및 제6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- 면허시험의 접수 또는 면허시험 응시일자 변경은 [시험이 시작되기 30분 전까지 시험장 방문 또는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\(boat.kcg.go.kr\) 홈페이지](#)를 통해 가능합니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를 착용해야 한다.

②・③ (생략)

<신설>

제6장 보칙

<신설>

-----.
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구명조끼를 대체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장비를 착용할 수 있다.

1. 영 제2조제2항제8호 및 제16호에 따른 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사용하여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경우: 보드 리쉬 (board leash: 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와 발목을 연결하여 주는 장비)

2. 「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수중레저활동을 위해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수중레저활동구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: 잠수복

제6장 보험

제39조의2(보험등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)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(이하 “보험회사등”이라 한

다)가 보험이나 공제(이하 “보험등”이라 한다)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려야 하는 시기는 별표 10의2와 같다.

② 보험회사등이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보험등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릴 때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(이하 “가입관리전산망”이라 한다)을 이용하되, 가입관리전산망이 작동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.

③ 보험회사등이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

1.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(신규 등록기구의 경우 안전검사 번호를 말한다)
2. 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(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칭,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를 말한다)

<신 설>

3. 보험등 계약기간

4.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, 지방해양경찰청장,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의무자에게 보험등 가입을 명하는데 필요한 항목

제39조의3(보험등 가입여부의 확인) 해양경찰청장, 지방해양경찰청장,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의무자가 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할 때에는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시하는 보험등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보험등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.

1. 해당 계약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파일이 생성되지 아니한 경우

2. 가입관리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

수상레저과	
연 락 처	032-835-2351